

[별표 5]

소방장비 매뉴얼의 고유번호(제13조 관련)

1. 번호구성

가. 장비의 명칭

나. 장비종류

다. 모델번호 : 해당 장비의 모델번호(문자와 숫자 등으로 표기)

라. 제조사 : 해당 장비의 제조사

마. 작성연도 : 매뉴얼의 작성연도

바. 개정횟수 : 01, 02, 03 등으로 표기한다.

2. 매뉴얼 고유번호의 표기

가. 시·도 소방본부 소속 관리부서에서 부여하는 매뉴얼의 고유번호

□	- 장비의 명칭 -	□□□□	-	□□□□	-	□□□□	-	□□
↓		↓		↓		↓		↓
장비종류		제 조 사		모 델 번 호		작 성 연 도		시·도 번 호

나. 소방청 소속 관리부서에서 부여하는 매뉴얼의 고유번호

□	- 장비의 명칭 또는 群 -	□□□□	-	□□□□
↓		↓		↓
장비종류		작 성 연 도		작 성 연 번

<비 고>

- "장비의 명칭"은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의한 분류 중 품목상 명칭을 말한다. 다만, 분류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.
- "장비종류"는 「소방장비관리법」 시행령 별표 1의 대분류에 따라 연번을 부여한다.
: 기동장비 1, 화재진압장비 2, 구조장비 3, 구급장비 4, 정보통신장비 5, 측정장비 6, 보호장비 7, 보조장비 8, 소방장비의 구성품 9
- "시·도 번호"는 소방청, 중앙소방학교, 중앙119구조본부,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, 경남, 제주, 창원의 순서대로 00번부터 20번까지의 번호를 말한다.
- 작성예시
 - "○○社에서 KKK013 모델번호로 제작한 특수방화복의 매뉴얼을 2020년에 서울에서 작성"한 경우 고유번호는 "7-특수방화복-○○社- KKK013-2020-03"으로 표기
 - "특수방화복의 매뉴얼을 2020년에 소방청에서 최초로 작성"한 경우 고유번호는 "7-특수방화복-2020-01 "으로 표기, 다만 작성연번은 작성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한다.